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2360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김용현, 장민수

피고B

변론 종결 2023. 5. 9.

판결 선고 2023. 6.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 C에게 2019. 5. 10.부터 2020. 7. 1.까지 사이에 합계 금 42,7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전 대여금 146,000,000원이 있었다.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42,7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9. 5. 10.	3,8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2019. 10. 11.	5,0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2020. 2. 26.	2,000,000원	차용금 및 146,000,000원 추가 연대보증 약정
2020. 4. 19.	1,0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2020. 5. 6.	2,0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2020. 5. 8.	2,0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2020. 5. 22.	3,0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2020. 5. 26.	1,2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2020. 5. 29.	1,2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2020. 6. 1.	10,0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2020. 6. 12.	10,9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2020. 7. 1.	600,000원	차용금 연대보증 약정
합계	42,700,000원	

나. 그 이외에도 원고는 C에게 2016년 총 5,300,000원, 2017년 총 9,800,000원, 2018년 총 17,700,000원, 2019년 총 34,750,000원¹⁾ 을 각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11. '2016년경 작성하였던 공정증서 금액을 갚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했던 A(원고)과 C와의 모든 채무 또한 B(피고)가 연대보증하여 갚기로 한다'고 약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판단

가. 본안전 판단

1) 피고의 주장 2016. 5. 10.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D(C 배우자)과 피고로 하여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6년 증서 제34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²⁾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2020. 9.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타채120239호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0.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청구이의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1793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2. 12. 6. 항소기각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1427호)이 선고되고, 2022. 12. 29. 확정되었다.

이 사건과 위 청구이의 사건은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송은 2019. 5. 10.부터 2020. 7. 1.까지 C가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과 관련된 피고의 연대보증 약정에 기한 소송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청구이의 소송은 2016. 5. 10.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라는 소송인바, 그 결과가 모순·저촉될 우려가 없는 별개의 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 판단

1) 원고는, 원고 주장의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차용증), 제9호증(차용증)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고 주장의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C에게 과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있고, C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바, C의 위와 같은 수여받은 권한 외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기본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질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관용

- 1) 가.항 중복 금액 제외.
- 2) '채권자인 원고가 2016. 5. 10. D(C 배우자)과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채무자 C에게 26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7. 4. 17.(다만, 2016. 8.부터 2017. 3.까지 매월 15일 300,000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2017. 4. 17.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로 하고 이자율을 위 잔액에 대하여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은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